

2021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1년 5월 25일(화) 14:00

2. 장 소 : 화도관 2층 대회의실

3. 대학평의위원회(11명)

■ 참석의원 : 김진곤(의장), 천성오(부의장), 이건영, 이경훈, 김태훈, 서원빈, 김민수 (7명)

■ 불참의원 : 박수원, 신상진, 조하연, 고민석(4명)

4. 안 건

가. 규정 개정(안)

- 1)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 2)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 3) 온라인강좌 운영 규정 폐지(안)
- 4)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5) 원격수업운영 규정 제정(안)
- 6)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7) 상담복지정책대학원 학사운영내규 개정(안)
- 8) 교원 보수 규정 개정(안)
- 9) 전임교원 연봉제 규정 개정(안)
- 10) 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 11)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 12) 광운발전협의회 규정 폐지(안)
- 13) 정보보안 규정 개정(안)
- 14) 교직과정 운영 규정 개정(안)
- 15)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개정(안)
- 16) 광운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 내규 개정(안)
- 17) 광운영상방송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 18)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5. 회의 내용 및 회의결과

성원확인후(총 11명 중 7명 참석)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심의 규정 개정】

1)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 입학관리팀장 및 교육지원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입학지원서류 관련 용어의 재정비
 - 입학전형자료 중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근거 신설
 - 원격수업 운영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광운대학교 학칙에 명시된 용어를 변경하여 규정간 용어 통일
- 박수원 의원(이메일 의견 제시)은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 제13조(입학자격) 1호의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의 중복 부분과 3호의 “또는 교육부 장관”부분 삭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입학관리팀장은 타당한 의견임을 수용하여 수정하기로 하다.
- 이건영 의원은 규정 개정안 상정시 신규조문 대비표의 비교 부분에 개정 근거와 사유를 상세히 서술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또한 용어, 어법 등 기본적인 사항을 상정부서와 기획관리위원회에서 세밀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의원 전원은 이에 동의하다.

▪ 의결내용

-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 제13조(입학자격)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1. 고등학교 졸업자”로 “3. 기타 법령 또는 교육부장관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를 “3.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로 수정가결하다.

-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 제15조(입학지원서류) “서류를 첨부하여”에서 불필요한 “첨부하여”를 삭제하여 “서류를”로 수정가결하다.

2)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 입학관리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해당 조항 명칭 변경(입학의 취소 → 입학허가의 취소)
 - 불합격 처리 또는 입학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각 호 신설
- 박수원 의원(이메일 의견 제시)은 제4조(입학허가의 취소) 1호의 “허위기재 등”의 표현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없는 내용으로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입학관리팀장은 사정관제도의 자기소개서 부분에서 허위기재 사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의원들이 필요성에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3)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대학원 교학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신입학 석사인정학점 범위는 동일전공 최대 30학점, 유사

전공 최대 24학점, 타전공은 최대 18학점 이내로 인정

- 경영대학원 학과 및 전공 폐지, 학과 신설
- 이건영 의원은 학과 폐지와 신설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절차로 충분한지 절차적인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다. 이에 기획처장과 간사는 기획관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또는 향후 개정이후 총장 결재 등의 후속적인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보고 규정 개정】

1) 온라인강좌 운영 규정 폐지(안)

- 교육지원팀장이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온라인강좌운영규정 폐지
- 의장과 의원들이 온라인강좌 운영 규정 폐지의 사유에 대해 묻고 이에 교육지원팀장은 교육부 훈령과 원격수업 운영 규정 제정에 따른 폐지임을 설명하다.
- 이에 의원 전원은 원안대로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2)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육지원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원격수업 운영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용어를 변경하여 규정간 용어 통일
- 의원 전원은 규정 개정 취지를 이해하고 개정하는 것에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3) 원격수업운영 규정 제정(안)

- 교육혁신원장이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원격수업 운영 담당부서 및 조직
 -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 원격수업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원격수업 수강 및 이수에 관한 사항
- 박수원 의원(이메일 의견 제시)은 원격수업 운영 규정 제정(안)의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교육혁신원장은 상당 부분 의견을 수용하여 제2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를 수정하여 새로운 제정(안)을 의원들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구하다.
- 이건영 의원은 제2조(용어의 정의) 2항의 50%이상으로 규정한 근거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해 교육혁신원장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규정

하였다고 답변하다. 또한 원격수업의 혜택 또는 불이익, 교육혁신원의 인력현황과 현 인원으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해 교육혁신원장은 혜택 또는 불이익은 없으며, 현재 인력현황 등 제반사항에 대해 답변하다.

- 의원들은 제8조(원격수업 교과목 제작 지원) 2항과 관련하여 박수원 의원(이메일 의견 제시)의 의견, 관련 기관에 문의한 결과,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2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다.
- 의원들은 제8조(원격수업 교과목 제작 지원) 2항 및 3항과 관련하여 외부 콘텐츠 활용에 대한 절차와 비용 부분에 대해 묻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다.
- 이건영 의원은 제9조(원격수업 교과목 학사운영) 10항 "2주차 분량 이상을 사전 탑재되어야 한다" 부분의 부작용을 설명하며 "1주차 분량 이상을 사전 탑재되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수정 재공람하여 의원들의 동의를 조건으로 수정 가결하다.**

4) 상담복지정책대학원 학사운영내규 개정(안)

-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교학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제 3 장 교과과정 제16조(이수 및 수료 학점) ①항 변경
 - 제 5 장 학위논문 제30조(논문지도교수) ③항 변경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5) 교원 보수 규정 개정(안)

- 교무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제4조(봉급) : [별표1] 수정
 - 제13조(초임호봉의 확정) : [별표1] 수정
 - 제19조(상여금) ②항 : 상여금 구성 항목에서 직무수당 제외
 - 제21조(정근수당) :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규정'문구 삭제
 - 제27조의 6(체력단련비) : 삭제
- 교무처장 직무수당이 상여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상여금이 없는 연봉제 교원의 경우 호봉제 교원과 동일한 보직을 수행하더라도 상여금을 제외한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등의 개정 취지를 설명하다.
- 이건영 의원은 제19조(상여금)의 직무수당 및 제27조의 6(체력단련비)의 체력단련비 삭제로 인한 구성원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금액 변동 사항을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6) 전임교원 연봉제 규정 개정(안)

- 교무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제4조(연봉 책정) ②항 : [별표1] 수정
 - 제5조(최초연봉 책정) ①항 : [별표1] 수정
 - 제9조(기본역봉 책정) : [별표1] 수정
 - 제11조(성과연봉 책정) ①항 : [별표1] 수정
- 이건영 의원은 연봉제 교원의 처우 개선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의 급여 수준과 개선 로드맵에 대해 묻고 이에 교무처장과 기획처장이 현재의 연봉제 교원의 급여수준은 호봉제 교원과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고 큰 차이가 없음을 설명하다. 또한 교무처장은 연봉제 교원 간담회 계획에 대해 설명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7) 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 총무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상여수당에서 직무수당 제외(제23조 ③의 직무수당 삭제) 및 직무수당 변경
 - 위험수당의 별표 수정(제28조의2 [별표8]에서 '교환실 포함' 삭제)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8)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 예산조정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유관업무 폐지(제5조 6호 삭제)
- 의장은 기구신설 및 폐지 등으로 인한 업무분장 조정시 직제 규정, 사무분장 규정 등 전반적인 검토와 일괄 상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에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9) 광운발전협의회 규정 폐지(안)

- 예산조정팀장이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광운발전협의회 규정 폐지(규정 전문 삭제)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0) 정보보안 규정 개정(안)

- 정보운영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비대면 업무환경에 따른 보안대책 기준 마련 및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
- 김민수 의원은 상용서버, 개발서버의 분리 운영여부 등 운영 전반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해 정보운영팀장이 현황에 대해 설명하다.
- 김태훈 의원은 별지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의 절차 및 인적 적용범위 등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해 정보운영팀장이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반영사항으로 교원과 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처리기준이 결정될 수 있음을 설명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1) 교직과정 운영 규정 개정(안)

- 인제니움학부대학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교직과정 운영 규정 표시과목 및 제7조의 교과목 수정
 - 교직과정 운영 규정 [별표 1] 및 [별표 2]의 학과명과 표시과목 변경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2)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개정(안)

- 인제니움학부대학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교직주임교수의 직제 삭제에 따른 명칭 변경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3) 광운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 내규 개정(안)

- 기획평가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장학금 종류 및 지급 기준을 정하는 심의 및 의결 기구를 구체적으로 명시
- 의장은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 24조(장학금 지급)을 ①항과 ②항으로 분리하여 아래와 같이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제24(장학금 지급) ① 원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등을 정보과학교육원 학사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14) 광운영상방송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 광운영상방송센터장이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목적, 직무
 - 기구, 구성원, 임명, 업무, 자격 및 임기, 임원회의
 - 포상, 징계, 장학금
 - 재정, 예결산, 회계연도, 지출
- 김민수 의원은 규정 전반의 체계와 내용의 부족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또한 제11조(장학금)의 수혜 학점 기준의 상향 필요성을 제시하다.
- 천성오 부의장은 타 규정의 수혜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의원 전원은 동의하다.
- 서원빈 의원은 제9조(포상) 규정의 취지와 내용을 묻고 광운영상방송센터장은 활동, 헌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라고 설명하다. 또한 포상, 장학금, 취재비의 중복 혜택은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이건영 의원은 광운영상방송센터의 성격에 대해 묻고 이에 영상방송센터장은 언론기관의 성격보다 대외국제처 홍보팀 산하 홍보영상제작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하다.
- 천성오 부의장은 급여체계에 반영되지 못한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보상적 측면에서의 간사 수당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원 전원은 제정 취지에 동의하다.
- 의장과 의원 전원은 규정의 정확성과 체계성을 위해 수정하여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 의결내용 : 수정 재공람하여 의원들의 동의를 조건으로 수정 가결하다.

15)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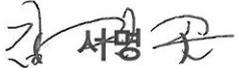
-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연구부정행위 결과에 대한 유형 및 위반의 정도를 고려한 제재조치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6. 폐회

안건에 대해 의장이 의원들의 추가 의견을 묻고 폐회를 선언하다.

2021년 5월 25일

이상의 회의 내용을 확인함.

의 장	김 진 곤	
부 의 장	천 성 오	
평 의 원	이 건 영	
평 의 원	박 수 원	(서명)
평 의 원	이 경 훈	
평 의 원	신 상 진	(서명)
평 의 원	김 태 훈	
평 의 원	서 원 빈	(서명)
평 의 원	조 하 연	(서명)
평 의 원	김 민 수	
평 의 원	고 민 석	(서명)